

투자일임계약서

고객명 : _____

회사명 : (주)이룸투자자문

_____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주)이룸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은 고객의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투자자금(이하 '투자일임자산'이라 한다)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투자일임자산 및 투자대상)

- ① 투자일임자산은 고객으로부터 일임 받은 재산 및 당해 자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 ② 회사는 계약을 제공함에 있어 투자일임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제 3 조 (투자일임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 ① 투자일임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② 투자일임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③ 유가증권 등 투자대상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 ④ 유가증권 등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 ⑤ 유가증권 등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 ⑥ 기타 제 1호 내지 제 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제 4 조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투자일임자산의 운용
- ② 투자일임자산 운용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제공
- ③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 ④ 기타 투자일임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 (투자일임담당자의 선임 및 변경)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할 담당자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일임 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객이 투자일임 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 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투자일임 담당자의 사망, 퇴직 등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일임 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일임 담당자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일임 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⑧ 고객이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일임 담당자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일임 담당자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조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
-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자산에 편입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
- ④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절차)

- ①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 ②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 실적 및 잔액을 고객에게 통보한다.
- ③ 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규정으로 내부통제기준, 리스크관리 규정 등을 마련하여 규정을 준수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제 9 조 (투자결과 등의 통지)

회사는 다음 각호에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 ①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 ② 투자일임자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매매회전을 등 운용현황

- ③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 ④ 투자일임자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일임 담당자에 관한 사항
- ⑤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기 및 금액
- ⑥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 10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명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고객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가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2. 고객이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 목적등의 변경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는 경우
-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계약의 유효기간)

- ①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고객과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② 회사는 계약만료일 30일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제 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12 조 (투자일임수수료 및 지급 시기)

-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1]에서 정한 투자일임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 1. 기본수수료: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기본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년 1회** 선취 징수하는 수수료
 - 2. 성과수수료: 투자성과에 대하여 고객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 ② 기본수수료는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성과수수료는 성과수수료 계산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의 종료 후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회사가 이 계약 또는 위탁투자지침 등 이 계약에 부수한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회사는 계약의 중도해지시 기수령한 선취수수료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함 후 고객에게 반환한다.

제 13 조 (계약, 만료, 해지시의 재산형태)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 해지하는 시점에서의 재산 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제 14 조 (투자일임재산의 평가)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현금 외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해지 시에는 해지일 전일,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 ① 자본시장법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등)에 의한 재산종류별 평가방법
- ② 기타 투자일임재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상호간 합의에 의한다.

제 15 조 (투자실적의 평가)

-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투자일임자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 14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②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배당락가격,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 16 조 (손익의 귀속)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됨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의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7 조 (업무의 위탁)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18 조 (통지의무)

- ①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지정된 투자서비스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별지1]세부계약조건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통지한다. 단,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변경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9 조 (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자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

제 20 조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와 그 임직원은 일임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① 고객에게 현금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현금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대여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제외)
- ② 고객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보관, 위탁을 받는 행위
- ③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④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⑤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가능
- ⑥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는 가능
- ⑦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⑧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⑨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가능
- ⑩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⑪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않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가능
- ⑫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위탁 또는 인출을 위임 받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는 금융기관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임 받는 행위
- ⑬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기타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 21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
- ②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고객의 운용지시 포함)로 인한 손실
- ③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22 조 (자산의 소유권)

-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거나 자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위임 받을 수 있다.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2.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4. 전환사채권의 전환권 행사
 5.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
 6.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 ② 고객은 회사에 관련법규 등에서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 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 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관련법규 등의 준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지 1] 세부계약내용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약자산	금 _____ 원정 (₩ _____ 원)
기본수수료	(재)계약금액의 연 ___%
중도 해지수수료	선취수수료의 _____%
환급수수료 계산	[기본수수료×(잔존일수/365일)]-중도해지수수료
성과수수료	고객과 별도 합의하여 정함 (금융투자업규정 제 4-73조제 7호)
수수료 지급시기	납기일 7 영업일 이내
거래증권사	
계좌번호	
'고객'에 대한 통지장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E-MAIL (선택 후 체크)
주소 / 이메일	
전 화	
고객요청사항	
투자운용인력(경력)	조세훈 / 이룸투자자문 8년
회사의 개요	설립일: 2008년 08월 08일
	자본금: 30억원
	주요사업: 투자자문일임
	대표이사: 조세훈